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삭제 등 〉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3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	3
2.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지정·운영 등	6
3.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9
4.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등	12
5.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삭제 등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4조).

나.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각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분원 설치·지정·운영, 업무위탁 등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다. 원장 등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가폭력을 비롯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포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라. 치유센터 운영재원에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을 포함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기부금품 접수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마.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등)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법인격) <신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한다. 1.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2.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② 제1항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체계적인 치유를 위해 동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광주광역시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제주센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현황>

구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16번길 19 (옛 국군광주병원 인근)	제주특별자치시 중앙로 273 2층
인원	정원 13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4명 별도 파견	정원 13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3명 별도 파견
규모	대지 4,000㎡, 건물 2,200㎡ ※ 총사업비 107억 2,400만원(국비 100%), 사업기간 2021~2024년, 2024.4월 준공	전용면적 458㎡ ※ 임차
시설현황	상담실6,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4, 심리검사실1	상담실2, 맞이방, 물리치료실1, 프로그램실2
예산	1,63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918백만원 - 사업출연금 712백만원	1,26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관운영출연금 884백만원 - 사업출연금 376백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에 속한 분원¹⁾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광주와 제주 양 지역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다르고 운영예산, 규모, 인원 등을 볼 때 상호 유사하다는 점에서 분원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라는 동격의 법인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및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에 설치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명칭을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경하고 광주

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와 제주센터가 동격의 법인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에 설립된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역에 새로운 치유센터 설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여 치유센터 확산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임.

2.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지정·운영 등(안 제6조)

개정안은 치유센터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분원의 설치 등) ①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분원의 설치 등) 치유센터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행법은 치유센터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원을 설치·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인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안
필요한 경우 분원 설치·지정·운영 가능 및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 가능	좌동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	분원의 설치·지정·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으로 정함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경우 기타 법인보다 엄격한 관리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원의 설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화는 현행 유지의 필요성 및 개정에 따른 법인의 자율성 제고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분원설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해당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동법 제7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정관으로 분원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정관으로 분원 설치 등이 가능한 입법례>

법률	법인
산업디자인진흥법 ²⁾	한국디자인진흥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³⁾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⁵⁾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⁶⁾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예산, 행정적 지원 등이 분원 설치에 수반되므로, 정관에 따라 분원 설치를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해양과학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해양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分院)을 설치할 수 있다.

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3.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1조제3호)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u><신설></u>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3. <u>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u>

현행법은 치유센터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⁷⁾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치유센터의 임원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트라우마치유센터 임원 및 감사 현황>

□ 초대 이사명단 : 원장 포함 9인

분야	성명	주요 경력
원장	차○○	- 現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원장 - 前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장,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
피해자 단체	나○○	- 前 5·18진상규명자문위원회 위원 - 前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장
	허○○	- 現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제주4·3연구소 소장 - 前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정부	백○○	- 現 법무부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前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및 임상강사
	한○○	- 現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 - 前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이○○	- 現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학술	최○○	- 現 한국심리학회 재난심리위원장,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 前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위원
의료	신○○	- 現 화순전남대 병원 치매퇴행성뇌질환 센터장,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前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법률	박○○	- 現 전주스마일센터 운영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 - 前 공익법무관 제10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초대 감사 : 1인

분야	성명	주요 경력
감사	서○○	◆ 現 법무법인(유) 올촌 변호사 ◆ 前 법무법인 LKB 구성원 변호사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치유센터 임원의 결격사유에 기존의 사유 외에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치유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을 지닌 사람을 임원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 결격사유가 다소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용에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치유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임원을 임명하려는 취지는 공감하나, 결격사유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4. 개인·법인·단체의 출연·기부방법 명확화 등(안 제17조제2호 등)

개정안은 치유센터의 운영 자금을 세분화하고 출연·기부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생략) 2. 기부금	제17조(운영재원) ----- -----. 1. (현행과 같음) 2. <u>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u>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u>보조</u> 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u>국가</u> ----- ----- ----- <u>보조하여야 한다.</u> ② <u>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u> ③ <u>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현행법은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운영재원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출연·기부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현행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에서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개인·단체 등의 출연,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관련 비교>

	현행	개정안
운영재원 (제17조)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1. 국가의 출연금, 보조금 2. <u>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u> <u>및 기부금</u> 3. 그 밖의 수입금
출연·기부 가능 (제18조)	신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 출연 및 기부 가능

참고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세분화 및 그 방법에 대해 개정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 근거 삭제 등(안 제18조제1항 등)

개정안은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의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의 출연·보조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u> 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u>보조</u>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① <u>국가</u> ----- ----- ----- <u>보조</u>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현행법은 제17조⁸⁾에서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을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되, 제18조⁹⁾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개정안은 동법에 따른 치유센터가 국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이 국비·지방비 50% 매칭 방식으로 편성되어

8)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립시설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현행법에서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립시설인 치유센터는 국가가 그 설립 및 운영의 주체로서 치유센터의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¹⁰⁾

현행법 제18조는 치유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치유센터에 출연·보조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¹¹⁾ 제3항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립시설인 치유센터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및 보조 근거를 삭제하기에 앞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²⁾

11)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정·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2) 치유센터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사업출연금에 한하여 지역 특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한편, 개정안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가의 출연·보조를 의무화하려는 바, 이를 통해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국립시설에 대한 국가의 출연 의무화와 관련한 입법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¹³⁾ 재정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여 법제원칙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정은 재량규정으로 법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트라우마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연구·조사와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재활 등의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담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 제3조 및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국비 분담 비율의 상향 조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치유센터 운영이 5개월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1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 제정 절차에 대한 신뢰도 훼손이 우려되고 법률개정보다는 일정기간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재원 분담 등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